
Policy and Law Report _Vol.11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1.15 ~ 11.21) -

November 23,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주재하고, 총 11건의 기업간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내용인 「제7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을 포함한 총 6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확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협력모델·상생모델) 승인에 관한 건 - 협력사업(모델) 최초로 개별기업이 아니라 주요산업의 핵심 밸류체인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5개 소부장 특화단지별*로 1개씩의 첨단소재 및 장비를 개발, 상용화하는 안이 포함 * 경기(반도체),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전북(탄소소재), 경남(첨단기계) ② 소재·부품·장비 미래 선도형 R&D 추진방안 - 그간 일본 수출규제 등 공급망 현안 대응을 위해 선정한 “185(100+85)대 R&D 핵심품목” +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65대 미래선도 품목”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미래선도품목에 대해서는 기술난제 극복을 위해 '25년까지 소재분야 미래기술 연구실 100개를 구축하고, 우수과제의 경우에는 8년 이상의 장기적 지원이 가능한 '갱신 R&D'를 도입 - 100+85대 R&D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핵심소재 연구단을 '25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소부장 R&D 전문인력을 '25년까지 7,000명 양성 ③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 BIG3+나노 등 4개 분야 31개 품목을 선정, 내년에 200억원 예산지원 등 소부장특별회계를 통한 R&D 신속지원을 추진 ☞ 동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시 '30년까지 장비 수입의존도가 84→34%로 감소하고, 1.8조원 규모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 ④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 강화방안 - 소부장·BIG3 등 핵심기술분야 중심으로 IP-R&D 확산, 기술보호전략(IP믹스전략) 제공 및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도 대폭 확대(2→200개 기업)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대상·규모·한도를 대폭 확대*, 특허분쟁 경영난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기업당 10억원)도 신규 지원 * (지원대상) 수출 중소·중견→전체 중소·중견 / (지원한도) 컨설팅 지원한도를 기업당 1억원 → 2억원으로 상향 ⑤ 글로벌공급망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안 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 등이 있음	2021-11-17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 정책점검회의 /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사항 점검 (산업부) 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현황 (행안부) ③ 첨단 교통체계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토부) ④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관계부처 합동) 등이 있음	2021-1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식별처리, 동형암호, 차등 정보보호 등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중점 투자 ② 국가 통계시스템(케이-통계시스템), 의료, 물류·유통 등 데이터 보호기술 활용 강화 ③ 데이터 보호 특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 신규 지정 등 전문인력 양성강화 ④ 보호·활용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데이터 보호 신기술 지침” 마련 등이 있음	2021-11-18
산업통상자원부	•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수렴하고, 구체적 지원정책의 첫 단추로서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과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에 대해 논의함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부 탄소중립 R&D 예산을 '21년 0.8조원에서 '22년 1.2조원으로 확대 - '30년까지 산업부 R&D의 30% 이상('21년 16.7%)을 탄소중립에 투자 ②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7대 분야 핵심기술 제시	2021-11-17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table><thead><tr><th>에너지</th><th>산업(수송)</th><th>공통</th></tr></thead><tbody><tr><td>① 무탄소 발전 ② 재생 에너지 ③ 수소화 ④ 에너지 저장 ⑤ 계통 선진화 ⑥ 에너지 고효율화</td><td>⑦ 철강 ⑧ 석유화학 ⑨ 시멘트 ⑩ 정유 ⑪ 반도체/디스플레이 ⑫ 일반 산업 ⑬ 산업공통설비 ⑭ 친환경 자동차 ⑮ 친환경 선박</td><td>⑯ 자원순환 ⑰ CCUS</td></tr></tbody></table>	에너지	산업(수송)	공통	① 무탄소 발전 ② 재생 에너지 ③ 수소화 ④ 에너지 저장 ⑤ 계통 선진화 ⑥ 에너지 고효율화	⑦ 철강 ⑧ 석유화학 ⑨ 시멘트 ⑩ 정유 ⑪ 반도체/디스플레이 ⑫ 일반 산업 ⑬ 산업공통설비 ⑭ 친환경 자동차 ⑮ 친환경 선박	⑯ 자원순환 ⑰ CCUS	③ 성과 중심의 대형·통합형 R&D, 현장 중심의 실증형 R&D 집중 지원 「탄소중립 산업大 전환 비전과 전략」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부의 전폭적 지원 및 산업계 부담 최소화 원칙 ② 탄소중립 R&D, 세제지원·제도개선 등 산업계 목소리 적극 반영 (12월 발표 예정) 등이 있음	
	에너지	산업(수송)	공통						
① 무탄소 발전 ② 재생 에너지 ③ 수소화 ④ 에너지 저장 ⑤ 계통 선진화 ⑥ 에너지 고효율화	⑦ 철강 ⑧ 석유화학 ⑨ 시멘트 ⑩ 정유 ⑪ 반도체/디스플레이 ⑫ 일반 산업 ⑬ 산업공통설비 ⑭ 친환경 자동차 ⑮ 친환경 선박	⑯ 자원순환 ⑰ CCUS							
	•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무역대표부(USTR)와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함 금번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이 내년 3월로 다가옴에 따라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통상장관간 협의채널로 개최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내년 3월 한미 FTA 1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② 한미 FTA 체계內 통상정책 관련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최근의 新통상이슈 논의를 위한 채널 신설 협의 ③ 美 철강 232조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협상개시 촉구 ④ 美측에 우리기업 주재원 비자 기간연장, 항공기부품 원산지증명 등 이행이슈 제기 등이 있음		2021-11-19						

부처	내용	일시
고용 노동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작업 관련 새로운 안전보건 기준 시행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위험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② 달비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 안전조치 사항 구체화 ③ 벌목작업 시 적정 수구각(30도 이상), 안전거리 확보 등 위험방지 조치 강화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신설 등이 있음	2021-11-19
중소벤처 기업부	• 중소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全)주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6차 BIG3 혁신성장 추진회의에서 「K-반도체 전략 이행을 위한 시스템 반도체 중소 팹리스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함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책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시장 규모가 메모리반도체의 2배 이상이며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중소 팹리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초기비용 완화) ‘공동 IP(설계자산) 플랫폼’을 구축하여 IP 개발과 해외IP를 제공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설계인력 양성 ② (생산애로 해소) ‘대중소 상생협의체’를 구축하여 중소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등 생산공정 확보 ③ (수요기반 연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등 기업간 협력 지원으로 중소 팹리스의 공동 사업화 성공모델 창출 등이 있음	2021-11-18

부처	내용	일시
방송통신위원회	•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함 또한, 앱마켓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개정안을 정비함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각각 개정('21.9.14, 10.19. 공포)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됨 [시행령안]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앱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 앱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② (다른 결제방식 직·간접적 제한) -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③ (규제우회 등 방지) - 보충조항으로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제8호 판단기준) 거래상 지위, 강제성, 부당성 판단기준 - (거래상 지위)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규모 이상(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앱마켓의 시장상황, 해당 앱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 격차, 앱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대안 판매경로 여부, 데이터 의존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강제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 시 불이익을 제공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2021-11-17

부처	내용	일시
	- (부당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포함한 이용자 이익 저해성과 공정경쟁 저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외사유는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보안 등 이용자 편의 증대효과를 입증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② (제9호/제10호 부당성 판단기준) 지연/삭제에 합리적 사유 여부(실체적 공정성)를 기준으로, 지연/삭제와 관련한 기준·사전고지 여부·불만처리절차 여부(절차적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등이 있음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수출 준비부터 통관까지 「주요국 식품안전규제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4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부산 등 5개 권역에서 ‘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함 * 최근 3년간(’18~’20) 국내기업의 수출 실적이 많은 주요 4개국 이번 설명회는 국내 제조 식품 수출시 상대국의 수입요건과 식품안전기준(표시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지연, 부적합 등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요국의 식품유형별 수입 요건과 부적합 사례 ② 국내 수출업체의 현지실사 모범 사례와 준비사항 ③ 주요국 식품안전기준(표시, 유해물질 미생물 기준 등) 식품수입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과 제·개정 사항 등이 있음	2021-11-17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의 미래와 발전방향 논의 금융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 회사 CEO, 유관기관 등 여신전문금융 업계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지고 여신전문금융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함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 방향으로 ①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카드사에게 허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하여 부수·겸영 업무 확대 *카드사의 겸영·부수업무로 영위가 가능하도록 '20.8월부터 허용 -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다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 구축 ② 카드사·캐피탈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마이데이터(Mydata)를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금융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 - e-커머스, live-커머스에 대한 투자와 진출 등 플랫폼 사업 영역 확대 -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 검토 *자동차, 기계설비 등 구매 시 반드시 보험이 연계되는 특성을 감안 ③ 여신전문금융산업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신기술사업금융사의 창업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최근 개인투자자의 신기술사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필요한 규제 보완 - 캐피탈사가 4차산업, 환경 분야 산업발전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용 부동산 리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 검토 등이 있음	2021-11-17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 안전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1.19. 시행)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을 적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8190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하는 직영점 현황을 전체 직영점의 명칭, 소재지, 연간 평균 매출액 등으로 정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의 예외 사유를 국내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의 매출액 비중과 온라인 · 오프라인 전용 판매 상품의 비중 등을 적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부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021-11-19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1.11.19. 시행)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 · 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174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에게는 화학물질의 품명 · 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1-11-1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고용 노동부	• 「<u>근로기준법 시행령</u>」 (2021.11.19. 시행)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8176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 이에 따라,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절차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충족해야 하는 기숙사의 구조와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제27조의2 신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에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내역 등을 적어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내역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함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절차 마련 (제43조의3 신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③ 기숙사의 구조 및 주거 환경의 개선 (제55조제1호 및 제57조제2호) -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의 침실 하나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 수를 15명 이하에서 8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함 - 사용자가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수면 시간대에 대한 고려 없이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주의 기숙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2021-11-1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고용 노동부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별표 7 제2호사목 및 카목 신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1.11.19. 시행) 건설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混在)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도록 함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의 유형,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 시기·내용 등 조정 (제53조의2 신설)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여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을 최소화함 ②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 (제55조의2 신설) -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 기재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함 ③ 안전·보건 조치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 (제67조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제68조) - 안전·보건 조치 및 안전·보건 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방문점검원 등을 추가하여 산업 현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④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 기준 (제109조의2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환수금액의 기준을 정함	2021-11-1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계약 시 전산시스템의 사용 근거 마련 (별표 18 제2호나목 신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술지도계약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 ⑥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별표 35 제4호바목 신설)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u>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u>」 원유 수급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하여, 미주(美州),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非중동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원유 수입 비용 중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대상지역 명칭 변경 (안 제27조제3항) - 국제 에너지 수급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대상지역이 확대 또는 변경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명칭을 중립적인 의미의 ‘다변화 지역’으로 변경함 ②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일몰 연장 (안 제27조제3항) - 원유 수급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하여,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 의견제시기간 : 11/18(목)~12/9(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로 제출	2021-11-1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할당대상업체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 유도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 할당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배출량 감소에 따른 배출권의 불이익을 방지하자 함. 또한 배출량이 변동될 경우 당연 변동되는 추가 할당량 및 할당 취소량을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존 할당대상업체 내부에서의 감축실적 외에 외부에서의 감축실적,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서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7조, 별표 1, 별지 제26호) ② 계획기간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 작성 시,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기준기간 명세서를 활용하여 할당량 결정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③ 기준기간 중 신설 시설이 가동률 증가로 인해 해당 이행연도 예상 배출량 대비 이행연도 배출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증설 시설로 간주하여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④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축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 결정량 산정 시 배출량에 감축실적을 반영하도록 함 (안 제15조, 제19조, 제24조, 제29조) ⑤ 업체가 배출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 인증배출량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업체의 이행연도 배출량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추가 할당량과 할당 취소량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20조, 제30조) ⑥ 추가 할당 신청 시 세부 관련 정보와 할당 취소 관련 연도별 취소량이 세부적으로 표출되어 제공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함 (안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 의견제시기간 : 11/19(금)~12/9(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기후경제과)로 제출	2021-11-1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해양수산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농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계속되고 있어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안 제10조 별표 2)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 기준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등으로 적용을 확대하며, 그 위반 횟수 산정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게 함 ※ 의견제시기간 : 11/16(화)~12/28(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로 제출	2021-11-16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을 보완·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원료목록 보고 등 준수사항,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제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능성화장품의 양도·양수 시 변경 심사 대상으로 정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합리적으로 보완하며 화장품의 유형 및 유형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개선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및 처리기간 등 신고서 서식 변경 (안 제8조의2, 제8조의4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에 상세 시설기준을 정함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 첨부 서류 목록에 시설의 명세서 추가 및 처리기간을 15일로 연장함	2021-11-1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첨부서류의 요건 추가 (안 제8조의6 및 별지 제6호의5서식)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등 서류의 요건을 정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의5 서식) 첨부서류 목록에 반영함 ③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변경심사 대상으로 규정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 (안 제9조 및 별지 제8호서식) -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의 양도·양수 시 변경심사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별지 제8호서식) 첨부서류 목록에 양도·양수계약서 추가 및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함 ④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보고 의무 보완 (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 - 맞춤형화장품 부작용 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1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함 ⑤ 회수 대상 화장품에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 추가 (안 제14조의2) -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하는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에 포함함 ⑥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기재 의무 제외 대상 규정 (안 제19조의2) -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기재 의무 적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화장품 범위를 규정함 ⑦ 화장품의 유형 및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정비 (안 별표3) - 화장품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공통사항 외에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주의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위임함 ⑧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및 영업자의 의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안 별표 7) - 행정처분에 대해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기준 날짜 등을 명확히 반영함 - 소비자용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 처분을 신설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 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처분에 반영함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시설기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분을 신설함 ※ 의견제시기간 : 11/18(목)~12/28(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금융 위원회	• 「<u>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일부개정령안</u>」 고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21.8.17일 개정, '21.11.18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인허가지침을 이와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겸영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요건 합리화 (안 별표5 제6호) -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는 경우 전업 허가 요건 대비 완화된 대주주 요건만 적용하도록 한 시행령 별표 1 비고 개정 내용을 동 인허가지침에서 그대로 규정 등이 있음	2021-11-16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에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계약상의 불공정 문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재하도급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재하도급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5 신설 등)	2021-11-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유인 수단도 부족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감경과 같은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 평가 (안 제120조의2 신설) -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안 제120조의3 신설) -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취소 및 정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2021-11-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점 밖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이 넓게 인정됨. 한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가치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계약한 금융상품의 가치가 14일 이내에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당하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으나, 이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금융상품을 계약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향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안 제16조의2 신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방문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방문 및 전화가 금융상품의 판매목적이라는 점 등을 밝혀야 함 ②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법제화 (안 제21조의2 신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소개 및 권유를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본인에게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③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 (안 제21조의2제3항)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의 소개 및 권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금지(단,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는 제외)	2021-11-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④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안 제23조제2항) -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⑤ 자료열람권을 침해하는 특약 무효화 (안 제28조제8항 신설) - 자료열람청구권에 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맺는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함 ⑥ 법적분쟁 시 전속관할 (안 제66조의2 신설) - 방문 및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소송 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함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요금정산,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글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의 수집 동의를 쉽게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 기능을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겼다는 주장이 미국 애리조나 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되는 등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위치정보수집·이용 등에서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이용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2021-11-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최근 온라인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의 주요 기반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플랫폼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동영상과 콘텐츠 제공, 배달 중계,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특히,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은 과도한 소비자 요금 인상, 중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강요 등 폐해로 이어져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 차별과 갑질 횡포도 빈번한 실정임 반면 현행법상 대형 플랫폼의 일방적 요금·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상당히 미비하여 국민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됨 이에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여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중심의 ICT시장 환경에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2 신설 등)	2021-11-18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 오늘날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 및 시청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OTT:Over The Top)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막대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OTT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오징어 게임’, ‘미스터션샤인’, ‘킹덤’ 등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국내 OTT사업자 지원 및 건전한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국회는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상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여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부대의견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음 이에 OTT에 대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OT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2조제14호 신설)	2021-11-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20인)」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하나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부정경쟁행위에 포섭되지 않는 나머지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이유로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조사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벌칙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온라인서비스와 같은 경우 대기업이 시장조사라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와 성과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청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입장은 사실상 대기업의 횡포를 묵인해 주고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의지를 꺾는 불공정한 처사임 이에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권고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1항 단서조항 신설 등)	2021-11-15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경험과 철학, 노하우가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필수적임. 하지만 현재의 기업경영 환경에서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있음. 최근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은 현행 「상법」상 부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음. 따라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관기재사항과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 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육성과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2까지 신설)	2021-11-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보건복지 위원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분유업체로부터 자사 분유의 독점사용을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받았으나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친 바 있음 이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뿐 아니라 분유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 제23조의5제3항 신설)	2021-11-1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4인)」 현행법에서는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의 약국이 휴업하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약품 구입이 곤란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응급실 과밀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3 신설, 제69조의4제1호의2 신설, 제76조의3, 제77조)	2021-11-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보건복지 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일일 섭취량보다 함량이 다른 제품에 대한 안내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14조제5항 신설)	2021- 11-18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11/25(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안건처리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11/26(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65호 발간	
국회도서관	11/22(월)	「최신정책정보:국내」 제91호 발간 -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 등	
	11/23(화)	팩트북 제91호 「메타버스」 발간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접촉·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급부상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소개하고, 산업정책 및 시장전망 등 정리	
	11/23(화)	「현안, 외국에선?」 제24호 발간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탈석탄 정책 현황	
	11/24(수)	「국외 현안리포트」 - 침묵, 여성:온라인상의 젠더 공격에 대한 조사	
예산정책처	주중	「NABO focus」 제38호 발간 - 디지털세 최종합의 내용 및 향후과제	
	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1월호 발간 - 최근 주요국 인플레이션 동향과 시사점 등 국내 기업의 수익성 양극화 확대 요인 분석	
입법조사처	11/22(월)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3건) - 은행권의 점포 축소와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 중국의 전력공급 부족사태 원인과 시사점 -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11/24(수) 07:30	「제11회 NARS 시선과 논란」 - Big Tech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은? - 발제: 정호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유튜브
	11/22(월)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21년 유럽의 대외정책 평가와 2022년 전망	온라인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입법조사처	11/23(화) 10: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필수노동자의 근로환경 일반, 보건의료 실태·정책과제	온라인
	11/23(화)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 입법과정 개선방안: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쟁점	온라인
	11/23(화)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21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평가와 2022년 전망	온라인
	11/24(수)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21년 미국의 대외정책 평가와 2022년 전망	온라인
	11/26(금) 10:3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배제의 표용의 혼재:(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국격	온라인
	11/26(금)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21년 동북아정세 평가와 2022년 전망	온라인
	11/26(금)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토공간정보의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기술	온라인
미래연구원	11/25(목) 09:30	제3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유튜브 생중계

[별첨1] 제391회 국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운영위	11/24(수) 10:00	국회운영개선소위	법안 심사
	11/25(목) 10:00	전체회의	법안 등 의결
정무위	11/23(화) 14:00	법안심사1소위	법안 심사
	11/24(수) 10:00	법안심사2소위	법안 심사
기재위	11/22(월) 10:30	조세소위	법안 심사
	11/23(화) 10:00	경제재정소위	법안 심사
	11/24(수) 10:30	조세소위	법안 심사
	11/25(목) 10:00	경제재정소위	법안 심사
	11/26(금) 10:30	조세소위	법안 심사
교육위	11/23(화) 14:00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11/24(수) 14:00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11/25(목) 10:00	전체회의	법안 의결
과방위	11/22(월) 10:00	전체회의	법안 상정
	11/22(월) 10:30	전체회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김의철) 인사청문회
	11/25(목) 09:30	법안심사제2소위	법안 심사
행안위	11/22(월) 09:30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 심사
	11/23(화) 09:30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 심사
	11/24(수) 10:00	법안심사제2소위	법안 심사
	11/25(목) 10:00	법안심사제2소위	법안 심사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농해수위	11/23(화) 14:00	해양수산법안소위	법안 심사
	11/24(수) 10:00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법안 심사
산자위	11/23(화) 10:00	전체회의	법안 의결 등
	11/23(화) 11:00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법안 심사
	11/24(수) 10:00	중소벤처기업소위	법안 심사
	11/25(목) 10:00	전체회의	법안 의결
복지위	11/23(화) 11:00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 심사
	11/24(수) 09:00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 심사
	11/24(수) 13:00	법안심사제2소위	법안 심사
	11/25(목) 09:00	법안심사제2소위	법안 심사
	11/25(목) 13:20	전체회의	법안 의결
국토위	11/22(월) 10:00	전체회의	안건 미정
정보위	11/23(화) 10:30	전체회의	예산안 상정 등
	11/23(화) 14:30	예결산소위	예산안 심사 등
	11/24(수) 10:00	예결산소위	예산안 심사 등
	11/25(목) 10:30	전체회의	예산안 의결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22(월) 10:00	개인형이동수단(PM) 활성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서범수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22(월) 13:00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안 대토론회	김병욱 의원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	국회도서관 강당
11/22(월) 14:00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3(화) 14:00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지체계 세미나 - 기후위기와 생태복지	김민석 의원실, 연구단체 약자의 눈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24(수) 14:00	방위산업 보안정책 토론회 초연결시대 방산 보안 구조전환 방향	윤주경, 강대식 의원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5(목) 09:00	K-스마트팜 성공방식과 향후 과제는	여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5(목) 14:00	동북아시아 녹색경제공동체 세미나	김홍걸 의원실, 국회동북아평화미래포럼 외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10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1/1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8호 발간 -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	
	11/16(화)	현안입법 알리기 - 주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입법조사처	11/15(월)	「NARS 입법·정책」 제89호 발간 -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미래연구원	11/18(금)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1호 발간 -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정부 간 사업분담 체계 개편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15(월) 10:00	<u>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u>	정청래·임오경·장경태· 강훈식·고민정 의원실 외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16(화) 10:00	<u>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u>	조승래 의원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외	국회도서관 대강당
11/19(금) 09:30	<u>국회기후변화포럼 토론회</u> - 2030 NDC 상향! 평가와 후속과제는?	유의동·한정애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외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